

〈간이투자설명서〉

기준일: 2025.05.18

한화 PLUS K 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펀드코드: DT823]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을 FnGuide 리츠 지수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수방법론에 따른 투자대상 변동 위험, 부동산투자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추적오차발생위험, 국내리츠투자 위험, 상장폐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 PLUS K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FnGuide 리츠 지수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추적대상지수(기초지수)인 FnGuide 리츠 지수를 완전 복제
- 추적대상지수(기초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추적대상지수(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 투자될 수 있음
- 추적오차의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신규 편입 예정종목 등 다른 종목에도 일부 투자 가능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추적대상지수(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 시
- 추적대상지수(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 시
- 신탁재산 내 구성종목의 부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 시

■ 추적대상지수(기초지수): FnGuide 리츠 지수

지수소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종목 중 특별자산군(REITs)에 속하는 기업들로 구성하여 국내 상장 리츠 부문의 성과를 추종하도록 함 (http://www.fnindex.co.kr/overview/detail/I/FI00.WLT.HHR)
유니버스	종목선정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특별자산군(REITs)에 속하는 종목 (단, 특별자산군(REITs) 종목만으로 지수 구성종목수가 10종목이 되지 않을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특별자산군(REITs)에 속하지 않는 종목이 지수 구성종목에 포함될 수 있음)
편입종목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 ●재무 건전성 및 유동성 기준 ①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

투자목적
및 전략

	제외 ② 선박투자회사, 인프라투자회사, 해외주, ETF, ETN, SPAC 제외 ③ 재간접 REITs 종목 제외 ④ 그 외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 제외 ⑤ 시가총액 1,500억원 미만인 종목 제외 ⑥ 6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억원 미만인 종목 제외 ● 단, 편입 대상 종목수가 10종목 미만일 경우 종목 선정 기준을 낮춰 시가총액 200억 이상 및 6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편입하여 최소 구성 종목 수가 10종목이 되도록 종목을 선정함 ● 만일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지수 내 구성종목이 10종목 미만인 경우 상위 표기된 재무 건전성 및 유동성 기준을 만족하면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6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20억원 이상인 REITs에 속하지 않는 종목 중 배당수익률 상위 순으로 지수 내 구성종목이 10종목이 될 때까지 순차 편입함. 단, 수시변경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REITs 종목이 상장되어 수시변경이 진행될 시 지수 편입종목 중 REITs에 속하지 않는 배당수익률 하위 종목이 편출되고 신규 REITs 종목이 편입됨						
포트폴리오 구성(예시)	(2025. 02. 04 기준)						
	순위	종목명	등록지	형태 (하위섹터)	투자비중 (%)	시가총액 (억원)	홈페이지
	1	SK 리츠	한국	상장리츠 (오피스/ 수차리센터 / 주유소)	16.31	13,530	http://www.skreit.co.kr/
	2	ESR 캔달스퀘어리츠	한국	상장리츠 (물류센터)	15.21	10,047	http://www.esrks-reit.com/
	3	신한알파리츠	한국	상장리츠 (오피스)	12.02	6,978	http://shalphareit.com/
	4	롯데리츠	한국	상장리츠 (리테일)	9.52	9,131	http://www.lottareit.co.kr/
	5	제이알글로벌리츠	한국	상장리츠 (오피스)	9.51	4,855	https://www.jrglobalreit.com/
	6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한국	상장리츠 (주유소)	7.57	3,889	https://koramcolifeinfra.com/
	7	한화리츠	한국	상장리츠 (오피스)	6.82	6,187	https://hanwhareit.com/
	8	삼성FN 리츠	한국	상장리츠 (오피스)	5.33	4,065	http://www.samsungfnreit.com/
	9	KB스타리츠	한국	상장리츠 (오피스)	5.12	3,210	http://kbstarreit.com/
	10	다인디지털리츠	한국	상장리츠 (오피스/ 물류센터)	3.77	2,674	http://dndplatformreit.com/
	11	코람코더원리츠	한국	상장리츠 (오피스)	3.2	1,846	https://koramcothe1.com/
	12	이리츠코크렙	한국	상장리츠 (리테일)	3.08	2,553	http://www.ereits.co.kr/
13	신한써부타엔리츠	한국	상장리츠	2.07	1,919	http://shsbreit.com/	

			(쇼핑몰/ 호텔)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5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향후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대상 자산 및 투자비중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지수인 ‘FnGuide 리츠 지수’와 동일 지수사업자 (FnGuide)가 산출하는 ‘FnGuide K 리츠 지수’는 상이한 지수로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지수 모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에 주로 투자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FnGuide 리츠 지수’는 유니버스 구성시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기준을 충족한 리츠 종목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정기 변경 일정 및 수시변경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수사업자인 FnGuide 홈페이지(http://www.fnindex.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비중 결정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종목교체기준 (정기변경일)	연 2회 (매년 6월, 12월 선물옵션만기일(D) 익주 첫 영업일(D+2)부터 5영업일 간(D+2, D+3, D+4, D+5, D+6)) ① 종목 선정은 매년 5월, 11월 마지막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수행 ② 6월, 12월 선물옵션만기일(D) 종가를 기반으로 최종 비중을 선정하여 익주 첫 영업일(D+2)부터 5영업일간(D+2, D+3, D+4, D+5, D+6) 정기변경을 수행					
수시변경	● REITs로 분류되는 종목이 신규상장 할 경우,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5영업일이 경과하였고 시가총액 1,500 억원 이상, 60 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 억원 이상일 때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익월 선물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 (D+2)부터 두 번째 영업일(D+3)까지 2영업일간 50%씩 지수에 편입 ●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지수구성종목 중 REITs 에 속하지 않는 일반주권 종목의 1 개월 평균 지수 내 총 비중이 40%를 초과할 때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D+2 부터 D+3 까지 REITs 에 속하지 않는 일반주권 종목의 지수 내 총 비중을 35%로 제한					
CAP 비율	● 15% ● REITs 에 속하지 않는 일반주권 종목의 지수 내 비중합이 35%가 넘는 경우 ① REITs 에 속하지 않는 일반주권 종목의 지수 내 비중합을 35%로 제한. 이 때 개별 일반주권 종목의 최대 비중은 15%, 나머지 65% 비중은 REITs 에 속하는 종목에 동일가중 방식으로 분배					
산출기준일 및 가격	2021. 06. 14. / 1,000pt					
지수 공식산출일	2022. 02. 07.					
※ 추적대상지수(기초지수)의 산출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지수산출업자가 지수를 정상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추적대상지수(기초지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수시공시의 방법 등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 기초지수: FnGuide 리츠 지수 * 10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부동산(리츠-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상장지수투자신탁					
투자비용	클래스	투자자가 부담하는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종류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자정참가 회사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25	0.005	-	0.6628	68	139	214	375	855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 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01/01~2024/12/31	2023/01/01~2024/12/31							
	투자신탁	2022.05.23	0.86	-1.00			-10.00				
	추적대상지수	-6.00	-8.00			-17.00					
	수익률변동성(%)	14.13	12.87			15.57					
* 추적대상지수: FnGuide 리츠 지수 * 100% (추적대상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영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부동산) (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영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전상훈	1986	책임(매니저)	19	9,461	-	-	-0.12	3.05	2년 1개월	
	박찬우	1996	부책임(매니저)	2	189	-	-			3개월	
* 기준일: 2025년 5월 18일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지수방법론에 따른 투자대상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는 상장되어 거래되는 리츠에 대한 편입 비중을 정의된 방법론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수 방법론의 조건을 충족하는 리츠 종목 수에 따라 주식이 편입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방법론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거래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매영업일 공시되는 PDF 구성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자위험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 임대수익률, 공실률, 금리변동 등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은 경제상황, 과밀건축 및 경쟁증가, 재산세 및 운영비용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 건축규제 법령의 변동, 사고 또는 수용 손실, 환경적 위험, 점유권에 대한 소송, 이자율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의 사유를 포함합니다. 또한 홍수, 지진, 화산,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위험에 의해서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추적오차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가격 변동, 투자신탁보수, 매매수수료,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리츠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요하게 투자하는 국내 리츠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및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내 리츠가 투자한 보유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경제 환경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매각이 지연될 수 있어, 해당 리츠의 신탁계약기간 내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내 리츠가 투자한 보유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환경의 변화, 경제 환경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매각시점에 초기에 이루어져서 초기상환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

		족하여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투자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상장폐지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폐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거래에 따른 가격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상장된 이후 유동성공급자가 시장거래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호가 공백이나 거래부진, 헷지수단이 한국과의 시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거래, 휴일이나 해외거래소의 시스템 문제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인 기준가격과 시장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거래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시장을 통한 매입방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 중 매수(매수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	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방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매도(매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환매 수수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 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m)		
모집기간	2022년 5월 13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모집·매출 총액	제한없음
효력발생일	2025년 5월 29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